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단2179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피 고 1. B

2. 의료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

담당변호사 김은정

변 론 종 결 2020. 11. 5.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3,527,810원, 피고 의료법인 C은 3,263,9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주소지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의료법인 C은 주소지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각 정리표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피보험자들’)과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는 피보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진단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진단비 전액을 피보험자들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실손의료비로 위 진단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단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바,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MRI 진단금액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소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즉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갑 2, 3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중 퇴행성 및 만성 손상 이외의 것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한 추가진단검사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받은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한편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거나 한 사람에 대한 청구금액이 소액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원고가 채무자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판사 정정호

별지 1

D병원

사고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신상번호	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I 촬영년도	환자부담금 (원)	MRI전단료 비급여 (원)	원적금액 (원)
			남성	S83.2	한돈 반달안골의 횡경	입원	20110905	20110311	2011	91,948	400,000	308,052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발구, 열파	입원	20110919	20110823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10523	20110523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10613	20110723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5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한	입원	20110723	20110723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발구, 열파	통원	20110821	20110821	2011	91,948	400,000	308,052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파	입원	20111107	20111109	2011	91,948	800,000	708,052
			여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통원	20111112	20111112	2011	91,948	400,000	308,052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발구, 열파	통원	20111207	20111207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통원	20120109	20120109	2012	89,469	400,000	310,531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발구, 열파	통원	20120125	20120125	2012	89,469	400,000	310,531
			남성	S83.21	외측반달안골의 횡경	통원	20120130	20120130	2012	89,469	400,000	310,531
			여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20409	20120409	2012	89,469	400,000	310,531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20607	20120607	2012	89,469	400,000	310,531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파	입원	20120705	20120705	2012	89,469	400,000	310,531
			남성	S83.3	한돈 반달안골의 횡경	입원	20120811	20120812	2012	70,716	400,000	329,284
			남성	S83.2	한돈 반달안골의 횡경	입원	20120903	20120915	2012	70,716	400,000	329,284
			남성	S83.29	반달안골의 상세불명 횡경	입원	20121006	20121025	2012	70,716	400,000	329,284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파	통원	20121229	20121229	2012	70,716	450,000	379,284
			남성	S83.3	한돈 반달안골의 횡경	입원	20130121	20130122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5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한	통원	20130202	20130302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발구, 열파	통원	20130309	20130309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발구, 열파	통원	20130313	20130313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공의 손상	통원	20130422	20130422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발구, 열파	통원	20130529	20130529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29	반달안골의 상세불명 횡경	입원	20130614	20130622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20	내측반달안골의 횡경	통원	20130819	20130819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583.52	전십자재단의 차질	임원	20131021	20131022	2013	101,389	450,000	348,711
남성	583.6	우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화	임원	20131202	20131212	2013	101,389	450,000	348,711
남성	583.52	전십자재단의 차질	임원	20140124	20140124	2014	103,344	450,000	346,756
남성	583.43	내측측부인대의 차질	총원	20140218	20140218	2014	103,344	450,000	346,756
남성	583.43	내측측부인대의 차질	임원	20140408	20140412	2014	103,344	450,000	346,756
남성	583	우종의 관통 및 인대의 탈구, 열화	총원	20140521	20140521	2014	103,344	450,000	346,756
남성	583.6	우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화	총원	20140725	20140725	2014	103,344	450,000	346,756
남성	583	우종의 관통 및 인대의 탈구, 열화	총원	20140902	20140902	2014	103,344	450,000	346,756
남성	5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퇴진	임원	20141006	20141007	2014	103,344	450,000	346,756
여성	5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퇴진	임원	20141108	20141124	2014	103,344	450,000	346,756
남성	583.20	내측반달연골의 퇴진	총원	20141117	20141117	2014	103,344	450,000	346,756
남성	5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퇴진	총원	20150603	20150603	2015	105,046	450,000	344,954
여성	583.21	외측반달연골의 퇴진	총원	20150124	20150124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퇴진	임원	20150128	20150130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	우종의 관통 및 인대의 탈구, 열화	총원	20150214	20150214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	우종의 관통 및 인대의 탈구, 열화	총원	20150217	20150217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4	우종의 (비골)(관통)측부인대를 침범	총원	20150904	20150904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	우종의 관통 및 인대의 탈구, 열화	총원	20150408	20150408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52	전십자재단의 차질	총원	20150422	20150422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43	내측측부인대의 차질	총원	20150425	20150425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20	내측반달연골의 퇴진	임원	20150526	20150603	2015	105,046	450,000	344,954
여성	583.20	내측반달연골의 퇴진	총원	20150710	20150710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	우종의 관통 및 인대의 탈구, 열화	총원	20150814	20150814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5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퇴진	임원	20150925	20150926	2015	105,046	450,000	344,954
여성	5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퇴진	임원	20151026	20151114	2015	105,046	1,050,000	944,954
남성	583.2	왼쪽 반달연골의 퇴진	총원	20151123	20151123	2015	105,046	450,000	344,954
여성	5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퇴진	임원	20160112	20160122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583.43	내측측부인대의 차질	총원	20160113	20160113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583.2	왼쪽 반달연골의 퇴진	총원	20160219	20160219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43	내국측부인대의 자결	임원	20160330	20160402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53	후심자원대의 자결	임원	20160508	20160519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52	전심자원대의 자결	총원	20160603	20160603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20	내국반달연공의 월급	임원	20160630	20160630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	우물의 관할 및 인대의 할구, 열화	총원	20160621	20160621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7	우물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총원	20160701	20160701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20	내국반달연공의 월급	임원	20160729	20160805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52	전심자원대의 자결	임원	20160822	20160902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43	내국측부인대의 자결	총원	20161004	20161004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42	내국측부인대의 자결	총원	20161114	20161114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52	전심자원대의 자결	총원	20161121	20161121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22	내국 및 외국 반달연공의 월급	총원	20161128	20161128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52	전심자원대의 자결	임원	20170125	20170130	2017	108,496	450,000	341,504
여성	S83.22	내국 및 외국 반달연공의 월급	총원	20170125	20170125	2017	108,496	450,000	341,504
남성	S83.20	내국반달연공의 월급	총원	20170201	20170201	2017	108,496	900,000	791,504
여성	S83.6	우물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화	총원	20170203	20170203	2017	108,496	450,000	341,504
여성	S83.21	외국반달연공의 월급	임원	20170206	20170211	2017	108,496	450,000	341,504
남성	S83.6	우물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화	임원	20170217	20170221	2017	108,496	450,000	341,504
여성	S83	우물의 관할 및 인대의 할구, 열화	총원	20170307	20170307	2017	108,496	450,000	341,504
남성	S83.20	내국반달연공의 월급	임원	20170318	20170327	2017	108,496	450,000	341,504
남성	S83.6	우물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화	임원	20170406	20170417	2017	108,496	450,000	341,504
남성	S83.1	우물의 할구	임원	20170714	20170718	2017	105,520	450,000	344,480
여성	S83.22	내국 및 외국 반달연공의 월급	총원	20170719	20170719	2017	105,520	450,000	344,480
남성	S83.4	우물의 (비공인)측부인대를 임원	총원	20170811	20170811	2017	105,520	450,000	344,480
여성	S83.43	내국측부인대의 자결	총원	20170904	20170904	2017	105,520	450,000	344,480
여성	S83.20	내국반달연공의 월급	총원	20171010	20171010	2017	105,520	300,000	194,480
여성	S83.52	전심자원대의 자결	임원	20171127	20171202	2017	105,520	450,000	344,480
여성	S83.20	내국반달연공의 월급	임원	20180105	20180118	2018	104,288	450,000	345,712
남성	S83.52	전심자원대의 자결	임원	20180109	20180113	2018	104,288	450,000	345,712

가 201-1-26-25

[illegible]

별지 2

E병원

[illegible]